

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## 〔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(3공구)〕

- 점검일시 : 2018.06.07 (목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윤원섭,정진혁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P5 코핑 거푸집 작업장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이 상부난간으로 보기에는 기준 (90~120cm)에 미흡하고 중간난간 (45~60cm)으로는 높은 상태이므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높이를 조정하고 추가 보강요망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(개정) 공통-001(안전난간)</p>		2018.06.07	
		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P5 코핑 거푸집 작업장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기준에 맞게 설치 함. (상부난간대-110cm/중간난간대-55cm)</p>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P7, P8 코핑 동바리거푸집 해체로 인해 단부에 안전시설이 없는 상태로 거푸집 해체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작업여건에 맞게 적절히 설치하고 관련 작업자가 고리를 걸고 작업하도록 철저히 교육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</p>		2018.06.07	 
		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P7, P8 코핑 동바리거푸집 단부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대 설치 후 해체 작업 하였으며</p> <p>- 작업전 안전고리 체결 특별안전교육 실시 함.</p>	

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P6 계단참 발판이 기준인 40c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직부재와 이격이 생겨 낙하물에 의한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치요망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(개정) 공통-002(작업 발판 및 계단)</p>		<p>2018.06.07</p> 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P6 계단참 발판 50cm폭의 것으로 교체 후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 함.</p>	
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동바리 외부 작업발판을 켈틸레버 상태로 핀으로 고정된 동바리 수평부재에 거치하여 사용할 경우 하중재하시 고정부가 약하여 빠질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철선으로 고정된 교차부를 보강하거나 보강부재 설치 후 작업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(비계의 점검 및 보수)</p>		<p>2018.06.07</p> 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동바리 외부 작업발판을 켈틸레버 상태로 핀으로 고정된 동바리 수평부재 교차부를 철선으로 추가 보강하여 고정 함.</p>	
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현장 전체적으로 사용 중인 분전반에 수전부 방호가 미흡하고 배전용도가 표기된 회로도 없이 긴급상황시 해당 작업장의 신속히 단전이 안되는 상황이므로 수전충전부 방호와 회로도 및 차단기 부하명 표기요망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(개정) 공통-016(분전반)</p>	 	<p>2018.06.08</p> 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현장 사용 중인 분전반의 수전부, 절연테이프로 방호 조치 하였으며 회로도 및 차단기 부하명 표기하여 부착 함.</p>	 

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P5 코핑 거푸집 작업장 주변 이동통로 바닥에 설치된 가설전선은 밟혀서 피복이 훼손될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(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)</p>		<p>2018.06.07</p> 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P5 거푸집 작업장 주변 가설전선 상부거치하여 사용토록 조치 함.</p>	
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장암지하차도 U-TYPE 공사장 메인 분전반 수전용은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, 기계기구로 분전되는 차단기는 미세전류 누전을 차단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(감도전류 30mA, 동작시간 0.03초 이하)를 사용해야하나 현장에서 미세전류 차단이 안되는 배선용차단기를 분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교체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(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(개정) 공통-016(분전반)</p>		<p>2018.06.09</p> 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장암지하차도 U-TYPE 공사장 메인 분전반 배선용차단기를 제거하고 누전차단기로 교체 조치 함.</p>	

<p>○ 전도재해 예방</p> <p>- 장암지하차도 U-TYPE 바닥기초 작업장의 단차부는 동지수판이 설치되어 이를 밟고 다닐 경우 지수판 변형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고, 작업자 이동시 전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설통로 설치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		<p>2018.06.08</p> <p>○ 전도재해 예방</p> <p>- 장암지하차도 U-TYPE 바닥기초 작업장의 단차부 동지수판 변형 및 설전도 방지를 위하여 가설발판으로 통로 설치함.</p>	
<p>○ 품질관리</p> <p>- 장암지하차도는 흠막이가시설로 사용된 시트파일을 방청처리 후 내식성 도료로 도색하여 외벽마감으로 공사진행중이나 BOX구간 시점부에서 녹이 베어나온 상태이므로 신규 구간 도색시 보수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</p>		<p>2018.06.07</p> <p>○ 품질관리</p> <p>- 장암지하차도 BOX시점부 흠막이가시설로 사용된 시트파일의 녹이 베어나온 부분은 9월 중순경 2단계구간 도장작업시 보수조치 예정임.</p>	